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577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변론 종결2023. 7. 6.

판결 선고2023. 8. 17.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17,349,427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49,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7. 27. 접수

제835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1999. 2. 25.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20. 9. 28.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D은 2020. 7.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2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6.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88,400,000원(최초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이었다가 2017. 7. 31. 188,400,000원으로 채권최고액이 변경되었다)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라. D은 원고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2022. 4. 22. 기준 신용카드 채무원금 13,970,624원, 수수료 1,168,061원, 연체료 2,210,742원을 합한 17,349,427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마.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 약 22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약 7,9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위 다.항 기재 채무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2020. 9. 28. 기준 152,423,045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위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800,000원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와 D은,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피고의 친정이 결혼 당시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고 피고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가정이 유지되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약정(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산분할 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2022. 4. 22. 신용카드 대금 13,970,624원, 수수료 1,168,061원, 연체료 2,210,742원을 합한 17,349,427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원고의 D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과 피고의 재산상태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와 이혼하면서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과 피고의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으로는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D의 소극재산 중 D과 피고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된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합계 229,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52,423,045원이다.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분할대상 재산 중 적극재산은 D 명의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오직 이 사건 부동산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역시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앞으로 자녀를 부양할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D의 자녀는 재산분할 당시 성년의 상태였던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D의 혼인관계 파탄이 당사자 일방의 유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⑥ 다만 피고는 혼인 이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적지 않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와 D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재산으로 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는 상당하지 않은 과대한 것이고, 피고와 D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는 60%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데,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게 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고의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주장과 그 사정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 중 45,946,173원[= 76,576,955원(= 229,000,000원 - 152,423,045원) × 60%]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은 30,630,782원(= 76,576,955원 × 40%, 이하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17,349,42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17,349,4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49,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현정

별지